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 방범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내 범죄예방용 CCTV, 방범시설물 등의 설치시 보조금 지원 사항 신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4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shjgoods@korea.kr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3) 팩 스: 054-535-985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54-537-78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